

의안번호	2211492
의 퇴 인	신장식 의원
회 답 일	2025. 7. 25.
추계번호	25B378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점검결과 검증 위탁 등 비축사업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68억 3,400만원(연평균 73억 6,7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의4)	244	244	264	244	244	1,241	248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안 제16조의3)							
비축사업의 관리 (안 제13조의2)	7,243	6,913	7,028	7,145	7,264	35,593	7,119
합계	7,487	7,157	7,292	7,389	7,508	36,834	7,367

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수입비축사업 효과성 등 점검에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점검결과 검증 연구용역 비용 등에 대해 추계한 것으로, 실제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효과성 점검 및 점검결과 검증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안 제16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5조의4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활용해 추가재정소요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4(수급 조절위원회의 설치) 신설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둠(제1항)	의무규정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이 경우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제3항)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음(제4항)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의무/재량 규정
2	안 제6조(계약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함)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3항 신설)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음(제4항 신설)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신설)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8조(가격 예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과 상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음(제1항) ※ 가격 예시의 목적에 소비자 보호를 포함하고, 하한가격 외에 상한가격도 예시할 수 있도록 함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4항)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신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농산물의</u>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음.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 농산물 구매 대상을 기존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서 ‘농산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농산물의</u>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4항) ※ 수급 안정 사업 추진 대상을 기존 ‘채소류 등’에서 ‘농산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제5항 신설)	의무규정
5	안 제9조의2(가격 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구매한 농산물의 판매 2. 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 3.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이용권 지급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3조의2(비축 사업 관리) 신설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 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함)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 규정
8	안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신설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제1항)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3. 차액의 지급비율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의무규정
9	안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함(제2항) <u>1의2.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신설></u> 2. 제9조, 제9조의2, <u>제9조의3</u> ,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u>2의3.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신설></u> ※ 기금의 용도에 계약생산,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지출을 추가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신설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8	안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신설			
6	안 제13조의2(비축사업관리) 신설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6조(계약생산)	제3항 -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 계획 수립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매년 계획 수립 및 시행 중인 계약재배 물량, 목표 등을 법정 계획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임
		제4·5항 -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보전 및 계약성실 이행에 대한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생산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과잉생산 시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서 농산물로 확대하며,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고,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며,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즉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¹⁾의 용도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및 계약생산 등에 따른 지출을 추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특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상 농산물 품목, 품목별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생산량, 지급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3	안 제8조(가격 예시)		×	
4	안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5	안 제9조의2(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신설	×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주요 농산물 품목 가격하락분 차액 지급액}_{i,t})$ $= \sum_{i,t} [(\text{품목별 기준가격} - \text{품목별 시장가격})_{i,t} \times \text{품목별 생산량}_{i,t} \times \text{품목별 지급비율}_{i,t}]$ 이때, (품목별 기준가격 - 품목별 시장가격) > 0인 경우에 해당 t는 추계기간 5년, i는 주요 농산물 품목(채소, 과일 등)
7	안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	– 그러나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²⁾ 구체적 지원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현시점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계약생산 관련 단체 및 생산자의 손실 규모, 보전대상 품목 및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며, 손실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³⁾ – 가격예시의 경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5대 품목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등의 연구 용역을 추진 중으로, 개정안에 따른 상한가격 예시를 위한 연구에 해당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예시가격 지지를 위한 시책에 소비자 보호를 추가할 경우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등 현행 사업의 확대 여부 및 신규 사업 실시 여부 등을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음
9	안 제57조(기금의 용도)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수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안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3) 안 제6조(계약생산)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⁴⁾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의4 신설)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안 제16조의3 신설)

-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두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안 제16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5조의4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활용해 추가재정소요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제8조⁵⁾ 및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요율

(2025년 3월 기준,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3	1.9	2.0	2.0	2.0	2.0	2.0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요율	11.179	11.124	11.124	11.436	11.750	12.064	12.406	12.750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⁶⁾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일) 2013. 4. 30.
- (위원장) 2명
- (위원 수) 총 20명
 - (공무원) 총 5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유통소비정책관,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민간위원) 총 15명
 - * (직 중) 생산자대표 등 15명
(공공기관 1, 농협 1, 생산자단체 6, 소비자·유통업체 대표 4, 학계 3)
- (회의개최 횟수) ('22년) 2회, ('23년) 3회, ('24년) 5회, ('25년 6월) 4회
 - ※ [참고자료 1]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현황 참고
 - ※ 해양수산부에는 별도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 및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가정함

[표 2] 농산물 및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등 가정

위원회	위원수 및 세부 내역		현행		개정안
농산물수급 조절위원회	민간위원 수		15명	→	15명
	연간 회의개최횟수		4회		24회
	1인당 1회 회의참석 사례금		30만원 ⁷⁾		30만원
	위원회 운영비		1회당 3백만원		1회당 3백만원
	사업경비	검증용역 (품목별 기준가격 설정 등)	매년 5백만원		매년 5백만원
		적정성평가 등 (위기단계 가이드 라인 주기적 평가)	3년당 20백만원		3년당 20백만원
		예비비	1회당 1.5백만원 (운영비의 50%)		1회당 1.5백만원 (운영비의 50%)
	속기록 작성비		-		1회당 1백만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6)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9호)

위원회	위원수 및 세부 내역		현행		개정안
수산물수급 조절위원회	민간위원 수		미구성 ²⁾	➡	11명
	연간 회의개최횟수				4회
	1인당 1회 회의참석 사례금				30만원
	위원회 운영비 ¹⁾				1회당 3백만원
	사업경비 ¹⁾	검증용역			매년 5백만원
		적정성평가 등			3년당 20백만원
		예비비			1회당 1.5백만원 (운영비의 50%)
속기록 작성비 ¹⁾			1회당 1백만원		

주: 1) 해양수산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비, 사업경비, 속기록 작성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준용

2)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개정안에 따른 운영경비에서 현행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예산(기준선)을 차감하여 추계함

$\text{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 = \text{개정안에 따른 운영경비} - \text{현행 운영예산(기준선)}$
--

- 추계결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0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7)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표 3]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농산물 수급 조절 위원회 구성· 운영	개정안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민간위원 수(A, 명)		15	15	15	15	15	—	
			1인당 사례금 (B, 백만원/명)		0.3	0.3	0.3	0.3	0.3	—	
			연간 회의개최횟수(C, 회)		24	24	24	24	24	—	
			소계 (D=A×B×C, 백만원)		108	108	108	108	108	540	
		위원회 운영비	속기록 작성비 (E=C×1백만원)		24	24	24	24	24	120	
			회의 운영경비 (F=C×3백만원)		72	72	72	72	72	360	
			사업경비 (백만원)	검증용역 (G1)	5	5	5	5	5	25	
				적정성평가 (G2)	—	—	20	—	—	20	
				예비비 등 (G3=F×50%)	36	36	36	36	36	180	
				소계 (G=G1+G2+G3)	41	41	61	41	41	225	
			소계(H=D+E+F+G)			245	245	265	245	245	1,245
		현행 (기준선)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민간위원 수(A, 명)		15	15	15	15	15	—
	1인당 사례금 (B, 백만원/명)			0.3	0.3	0.3	0.3	0.3	—		
	연간 회의개최횟수(I, 회)			4	4	4	4	4	—		
	소계 (J=A×B×I, 백만원)			18	18	18	18	18	90		
	위원회 운영비		회의 운영경비 (K=I×3백만원)		12	12	12	12	12	60	
			사업경비 (백만원)	검증용역 (L1)	5	5	5	5	5	25	
				적정성평가 (L2)	—	—	20	—	—	20	
				예비비 등 (L3=K×50%)	6	6	6	6	6	30	
				소계 (L=L1+L2+L3)	11	11	31	11	11	75	
			소계(M=J+K+L)			41	41	61	41	41	225
			추가재정소요(N=H-M)			204	204	204	204	204	1,0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

-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개정안에 따른 가정을 참고하여 추계
- 추계결과,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억 2,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내용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수산물 수급 조절 위원회 구성· 운영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민간위원 수(A, 명)	11	11	11	11	11	—	
		1인당 사례금 (B, 백만원/명)	0.3	0.3	0.3	0.3	0.3	—	
		연간 회의개최횟수(C, 회)	4	4	4	4	4	—	
		소계 (D=A×B×C, 백만원)	13	13	13	13	13	66	
	위원회 운영비	속기록 작성비 (E=C×1백만원)	4	4	4	4	4	20	
		회의 운영경비 (F=C×3백만원)	12	12	12	12	12	60	
		사업경비 (백만원)	검증용역 (G1)	5	5	5	5	5	25
			적정성평가 (G2)	—	—	20	—	—	20
			예비비 등 (G3=F×50%)	6	6	6	6	6	30
			소계 (G=G1+G2+G3)	11	11	31	11	11	75
		추가재정소요(H=D+E+F+G)		40	40	60	40	40	221

주: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비, 사업경비, 속기록 작성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준용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두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2억 4,100만원(연평균 2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 안 제16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5조의4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활용해 추가재정소요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5] 수급조절위원회 및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204	204	204	204	204	1,020	204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40	40	60	40	40	221	44
합계	244	244	264	244	244	1,241	248

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안 제16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5조의4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활용해 추가재정소요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비축사업의 관리: 수입비축사업 효과성 등 점검 및 점검결과의 반영(안 제13조의2 신설)

□ 비축사업 개요

- (사업내용)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비축사업은 수급불안 시, 농산물 수매·수입 또는 방출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사업
* 비축농산물의 최적 보관조건 유지 등을 위한 정부 비축기지의 시설·장비 개보수 지원 포함

[표 6] 최근 3년간 비축사업 규모: 2022~2024년

	2022	2023	2024
도입	392,465	317,381	306,519
판매	344,452	290,669	272,84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대상품목) 수매비축과 수입비축으로 구분
 - (수매비축) 11개(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 배, 배추, 무, 감자, 밀)
 - (수입비축) 9개(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감자) (국영무역대상품목)
- ※ [참고자료 2] 수매 농산물 및 비축용 농산물 판매·방출 실적 및 매입 실적 참고
- (사업주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위탁)⁸⁾

- (예산) 최근 4년간 비축사업 관련 예산 현황

[표 7] 비축사업 관련 예산 현황: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비축지원(3031-323)	792,044	686,750	811,933	812,5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 위탁사업자가 비축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비축사업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라 함)에 위탁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aT가 비축사업 효과성 등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위탁사업비가 소요됨
- 또한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수입비축사업 점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점검결과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이 필요함
- 본 추계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수입비축사업 효과성 등 점검에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점검결과 검증 연구용역 비용에 대해 추계함

- 사업 효과성 등 점검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일반관리비(출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가정

- (점검 인원 수)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제출자료에 따라 신규로 충원하는 수입비축사업 효과성 등 점검 인원 수는 총 62명으로 가정
 - － 점검 대상 업체(품목별 국영무역 비축농산물을 구매하는 업체) 총 15,309개소에 대하여 격년(2년마다)으로 점검 실시(매년 전체 업체의 50% 수준)
 - ※ 점검 대상 업체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1일 2.5개소씩 점검 실시
 - － 1개소당 2인 1조 편성
 - － 1개소당 연간 2회 점검 실시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1인당 연간 근무일은 246일로 가정⁹⁾

※ 이때, 점검 인원은 aT 각 지역본부에 분산배치 되는 등 별도의 사무공간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표 8] 수입비축사업 효과성 등 점검 인원 수 산출

	품목	수입비축 업체 수 (A, 개소)	점검 비중(격년) (B)	연간 점검횟수 (C, 회/개소)	연간 점검건수 (D=A×B×C, 건/년)	1일 점검건수 (E, 건/일)	근무일수 (F, 일/년)	품목별 필요인원 (G=D(E×F))	1조당 인원 (H, 명)	총 필요인원 (I=G×H, 명)
식량	식용대두	1,232	50%	2	1,232	2.5	246	3	2	6
	콩나물콩	548			548			1		2
	팥	146			146			1		2
	녹두	76			76			1		2
	감자	25			25			1		2
	소계(①)	2,027	-	-	2,027	-	-	-	-	14
원예	고추	192	50%	2	192	2.5	246	1	2	2
	마늘	-			-			0		0
	양파	145			145			1		2
	참깨	12,945			12,945			22		44
	소계(②)	13,282	-	-	13,282	-	-	-	-	48
총계 (①+②)		15,309	-	-	15,309	-	-	-	-	62

주: 1. 점검대상 수입비축업체 수는 모선 별 입찰 업체를 기준으로 함

2. 품목별 필요인원(G)은 정수 단위로 올림한 숫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점검 인원 62명에 대한 인건비는 2024년 aT 정규직(일반정규직)의 1인당 직원 평균보수(76,348천원)를 바탕으로 산출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인건비에 최근 5년(2020~2024년 결산)간 aT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1.4%¹⁰⁾ 적용
 -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신규채용 기관부담금 요율 적용

9) 1인당 연간 근무일 246일 = 365일(1년)-119일(연간 공휴일)

연간 공휴일 약 119일: 토·일요일 104일(52주×2일),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4일, 신정(1.1.) 1일, 석탄일 및 성탄절 2일, 어린이날 및 현충일 2일. 단, 선거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음(「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

10) 최근 5년(2020~2024년 결산)간 aT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 평균보수 현황: 2020~2024년 결산 기준>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직원평균보수						
-정규직(일반정규직)기준	72,174	74,628	74,013	75,575	76,348	1.4%

주: 각 연도 결산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일반관리비) 출장비 등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의 25.6%로 산출(농림축산식품부 및 aT 제출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정부비축사업 위탁요율 개정 연구용역」, 2024.
- (자산취득비) PC·사무집기 등 1인당 자산취득비는 2027년 기준 713.2만원으로 2027년에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
 -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자산취득비 589.2만원¹¹⁾에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수입비축사업 점검결과 검증에 위한 연구용역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aT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2,000만원으로 가정

- aT가 매년 실시하는 유사 연구용역 「농산물 구매비축사업 효과측정」 비용 준용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연구용역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점검결과 검증 위탁 등 비축사업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55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수입비축사업 효과성 등 점검 관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수입비축 사업 효과 성 등 점 검	인건비(A)	4,937	5,007	5,078	5,150	5,223	25,395
	기관부담금(B)	580	604	630	657	684	3,155
	일반관리비(C)	1,264	1,282	1,300	1,318	1,337	6,501
	자산취득비(D)	442	-	-	-	-	442
	소계 (E=A+B+C+D)	7,223	6,893	7,008	7,125	7,244	35,493
점검결과 검증(F)		20	20	20	20	20	100
추가재정소요 (G=E+F)		7,243	6,913	7,028	7,145	7,264	35,593

주: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수입비축사업 효과성 등 점검에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점검결과 검증 연구용역 비용 등에 대해 추계한 것으로, 실제 효과성 점검 및 점검결과 검증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20. 6.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설치 현황

① 명칭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09호('23.12.29), 농안법 시행규칙('13.5.22)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4. 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농산물의 수급상황, 수급안정 대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⑦ 기 능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개선, 대응방안 수립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 등		
⑧ 위 원 (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관수 교수(서울대학교) * 당연직(), 위촉직(✓) 박수진 식량정책실장(농림축산식품부) * 당연직(✓), 위촉직()		
	공무원 (총 5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유통소비정책관,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 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민간위원 (총 15명)	(직 중) 생산자대표 등 15명(공공기관 1, 농협 1, 생산자단체 6, 소비자·유통 업체 대표 4, 학계 3)		
	기타	(별도구분) 여성 3명(15%), 비수도권 11명(5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대상		
⑨ 회의 개최실적* ('25.1~ '25.6)	본회의	출석 2회 * 서면 2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2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⑩ 예 산		'25년 : 68백만원		

□ 활동내역서

1. '25년 6월 기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2회)

* 분기별 개최(필요시 서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3년	3	3	3	0	0	0	0
2024년	5	5	4	1	0	0	0
2025년	4	4	2	2	0	0	0
총계	12	12	9	3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3년	54,000	54,000	-	-	42,000	21,000	-	21,000
2024년	52,000	28,000	-	24,000	50,682	27,965	-	22,717
2025년	68,000	33,200	-	34,800	38,442	16,442	-	22,000

* (‘23)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을 위한 용역비(74,500천원)는 별도 예산(유통개선 연구용역비)으로 집행

* (‘25) 집행액은 현재 기준(6월)으로, 12월까지 집행액은 변동 가능

[참고자료 2] 수매 농산물(법 제9조) 및 비축용 농산물(법 제13조)
관매·방출 실적 및 매입실적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관매·방출 실적: 2020~2024년

<수매 농산물 및 비축용 농산물 관매·방출 실적: 2020~2024년>

(단위: 톤,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관매·방출 물량	관매금액	관매·방출 물량	관매금액	관매·방출 물량	관매금액	관매·방출 물량	관매금액	관매·방출 물량	관매금액
수매 농 산물 (법 제9 조)	합계(A)		13,702	48,713	9,516	28,447	1,438	18,280	-	-	-	-
		고추	2,633	41,823	1,243	20,249	1,438	18,280	-	-	-	-
		마늘	2,058	1,998	8,273	8,198	-	-	-	-	-	-
		양파	9,011	4,892	-	-	-	-	-	-	-	-
		배추	-	-	-	-	-	-	-	-	-	-
		무	-	-	-	-	-	-	-	-	-	-
비축용 농산물 (법 제 13조)	합계(B=C+D)		277,728	472,567	280,951	489,134	343,013	629,256	290,669	581,063	272,842	532,216
	수매 비축 (C)	소계	20,947	47,214	15,267	38,200	50,974	81,258	37,408	45,865	56,357	74,561
		두류	9,100	40,480	4,897	25,660	2,465	11,227	4,014	19,277	9,901	41,176
		고추	-	-	-	-	-	-	-	-	-	-
		마늘	-	-	1,435	7,612	7,150	33,291	2,213	6,790	1,140	3,677
		양파	-	-	882	1,299	14,172	14,263	3,702	3,663	5,321	3,382
		배추	6,610	5,161	4,450	1,946	14,956	10,992	9,783	3,321	18,504	15,350
		무	2,496	1,244	30	12	2,038	1,411	9,029	4,083	13,465	6,859
		밀	820	279	3,573	1,671	3,989	1,440	5,246	2,180	6,874	3,053
		감자	1,921	50	-	-	6,204	8,634	3,421	6,551	1,152	1,064
	수입 비축 (D)	소계	256,781	425,353	265,684	450,934	292,039	547,998	253,261	535,198	216,485	457,655
		고추	-	-	-	-	-	-	1,941	18,315	1,416	10,933
		마늘	-	-	414	1,885	3,979	13,373	-	-	-	-
		양파	-	-	-	-	-	-	6,275	5,594	9,660	10,440
		참깨	42,380	174,746	46,116	193,976	49,268	236,767	44,656	210,124	43,045	213,439
		콩	179,785	169,225	187,487	177,928	204,425	212,958	174,027	224,213	143,453	168,964
		콩나물콩	14,547	35,694	12,753	31,013	13,581	37,265	7,182	23,628	1,988	5,411
		팥	17,450	35,777	17,083	37,586	16,520	38,560	15,606	46,842	14,977	44,933
		녹두	2,619	9,911	1,831	8,546	1,082	5,440	381	1,666	1,039	2,736
		감자	-	-	-	-	1,677	2,170	3,146	4,814	758	742
		배추	-	-	-	-	1,507	1,465	-	-	149	57
		무	-	-	-	-	-	-	47	2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매입 실적 및 계획: 2020~2025년

<수매 농산물 및 비축용 농산물 매입 실적: 2020~2025년(계획)>

(단위: 톤,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계획)	
			매입 물량	매입 금액	매입 물량	매입 금액	매입 물량	매입 금액	매입 물량	매입 금액	매입 물량	매입 금액	매입 물량	매입 금액
수매 농 산물 (법 제9 조)	합계(A)		1,392	3,314	3,000	1,208	-	-	-	-	-	-	-	-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고추	-	-	-	-	-	-	-	-	-	-	-	-
		마늘	1,392	3,314	-	-	-	-	-	-	-	-	-	-
		양파	-	-	-	-	-	-	-	-	-	-	-	-
		배추	-	-	-	-	-	-	-	-	-	-	-	-
		무	-	-	3,000	1,208	-	-	-	-	-	-	-	-
	합계(B=C+D)		262,637	294,206	301,202	400,238	392,465	654,090	317,381	584,183	306,519	597,440	313,888	742,750
비축용 농산물 (법 제 13조)	수매 비축 (C)	소계	12,748	14,464	46,583	71,270	86,208	155,293	67,415	114,306	89,497	213,171	93,180	251,696
		두류	1,180	5,107	3,411	21,474	9,406	45,533	11,115	54,250	25,828	128,005	30,000	153,180
		고추	-	-	-	-	-	-	-	-	784	15,383	1,650	20,468
		마늘	-	-	3,081	16,851	6,155	34,412	2,199	10,642	2,978	13,097	2,600	11,683
		양파	-	-	10,411	8,583	17,867	19,311	6,430	7,131	5,087	4,267	9,781	12,765
		배추	6,214	6,013	17,857	13,803	21,654	21,163	15,526	9,637	19,991	18,529	11,997	12,774
		무	4,501	2,484	3,000	1,465	7,000	4,574	9,893	6,235	15,546	13,383	6,152	5,280
		밀	853	860	8,401	8,588	16,561	17,503	18,892	20,343	17,882	18,838	30,000	33,858
		감자	-	-	422	506	7,565	12,797	3,360	6,068	1,400	1,669	1,000	1,688
	수입 비축 (D)	소계	249,889	279,742	254,619	328,968	306,257	498,797	249,966	469,877	217,022	384,269	220,708	491,054
		고추	-	-	-	-	-	-	2,920	24,103	1,240	9,046	1,780	15,782
		마늘	-	-	-	-	4,000	12,052	-	-	-	-	3,200	11,297
		양파	-	-	-	-	-	-	16,209	20,141	-	10	8,000	11,373
		참깨	41,700	103,846	48,882	117,894	53,605	179,253	38,160	143,374	48,332	181,184	50,817	217,059
		콩	175,189	120,900	180,277	149,913	216,559	216,342	165,692	218,221	149,295	151,374		
		콩나 물콩	15,000	17,571	8,800	12,744	10,500	21,175	9,460	18,235	-	-	137,779	177,767
		팥	16,000	33,888	14,460	44,009	16,387	59,166	14,547	37,730	16,647	39,234	17,247	52,567
		녹두	2,000	3,537	2,200	4,408	1,200	2,651	600	1,278	600	1,345		
		감자	-	-	-	-	2,499	6,567	2,330	6,759	759	1,912	1,885	5,209
		배추	-	-	-	-	1,507	1,590	-	-	149	164	-	-
		무	-	-	-	-	-	-	48	36	-	-	-	-

주: 2025년도는 예산 기준 계획물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3]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채소가격안정제 등) 관련 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계약재배 관련 사업 및 개요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수급안정지원) 노지채소·과수·과채 계약재배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및 수급 안정 도모
- (발식량작물수매지원)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발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두류·맥류계약재배) 두류·맥류 재배농가 등 실수요업체의 계약재배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소비기반 확대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채소가격안정지원) 노지채소류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면적조절, 출하정지, 조기출하 등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액 보전, 출하장려금, 산지폐기 비용 등 지원

□ 계약재배 대상 주요 농산물 품목

- 수급안정지원: (노지채소)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감자, 당근, 양배추 / (과수) 사과, 배, 감귤, 단감 / (과채) 오이, 호박, 풋고추, 가지, 토마토
- 발식량작물수매지원, 두류·맥류계약재배: 콩, 팥, 녹두, 밀 등
- 채소가격안정지원: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감자

□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 관련 예산 현황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 관련 예산 현황: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산지유통 종합자금 (융자) (3033-304)	수급안정지 원	노지채소(9개 품목), 과수(4개 품목), 과채(5개 품목)의 계약재배 소요 자금 지원	340,506	359,924	323,932	308,407
	발식량작물 수매지원	발식량작물 수매자금 지원	8,930	8,484	8,484	9,200
	두류·맥류 계약재배	두류·맥류 계약재배 농가 등 대상 소요자금 지원	39,806	40,912	23,666	25,549
	소계		389,242	409,320	356,082	343,156
농산물생산유 통조절지원 (3031-326)	채소가격안 정지원	노지채소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수급의무를 부여 하는 대신 가격차액 보전, 출하장려금, 산지폐기 비용 등 지원	45,145	55,190	55,190	20,716
	유통협약· 명령지원	유통협약·명령 이행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경비 및 부대 비용 지원	445	445	400	400
	소계		45,590	55,635	55,590	21,1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하한가격 결정 절차 및 주요 농산물별 하한가격 예시

-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9호)
 -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를 적용
 -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통계청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의 평균치를 적용. 다만,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하한가격으로 함

- 주요 품목의 하한가격 예시 사례: (노지가을배추) 1,235천원/10a, (노지가을무) 1,148천원/10a

경영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노지가을배추 (원/10a)	1,078,868	1,148,867	1,220,690	1,344,133	1,381,542	1,234,820
노지가을무 (원/10a)	1,134,614	1,117,386	1,041,120	1,279,838	1,168,128	1,148,217

*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최근 5개년 : '19~'23년